

【법 률】

○법률제13704호(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3705호(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3706호(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3707호(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3708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3709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3710호(민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3711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3712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3713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13714호(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3715호(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3716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3719호(형법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372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372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3723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13724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13725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13727호(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372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61
○법률제13729호(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62

(이면 계속)

○법률제13730호(광업법 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3731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70
○법률제13732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1
○법률제13733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3734호(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3735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5
○법률제13736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13737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37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3739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13740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1
○법률제13741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13742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85
○법률제13743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5
○법률제13744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88
○법률제13745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90
○법률제13746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90
○법률제13747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1
○법률제13748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93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85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94
○대통령령제26857호(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96
○대통령령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7
○대통령령제26859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
○대통령령제26860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6
○대통령령제2686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09
○대통령령제26862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0
○대통령령제26863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1
○대통령령제2686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3
○대통령령제2686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4
○대통령령제26866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8
○대통령령제2686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
○대통령령제26868호(조경진흥법 시행령)	120
○대통령령제2686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6
○대통령령제2687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8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9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0
○미래창조과학부령제61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34

○국방부령제88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
○국토교통부령제27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4
○국토교통부령제27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4
○해양수산부령제180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8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8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21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9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22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20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22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2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23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22호(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중정정)	238
○교육부고시제2015-85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정)	239
○교육부고시제2015-86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제정).....	248
○법무부고시제2015-383호(국적회복)	26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50호(2015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265
○환경부고시제2015-265호(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267
○환경부고시제2015-266호(소백산국립공원 죽계계곡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26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111호(신기술 지정)	270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19호(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	271
○통계청고시제2015-393호(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 운영 수탁기관 지정중정정)	272
○산림청고시제2015-115호(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 일부개정)	27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국적상실).....	273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국적상실).....	27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9호(하천점용 허가).....	27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1호(하천점용 허가).....	2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2호(하천공사 시행계획).....	27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82호(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29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8호(시설항로표지 신설).....	29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2호(항로표지 신설)	29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항로표지 신설)	29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연안정비공사 실시계획)	29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저도도등<전·후도등> 기능정지)	29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0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	29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3호(하천수사용 허가).....	29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4호(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29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6호(하천수사용 허가).....	29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8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29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9호(하천수사용 허가).....	29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20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효력 정지).....	29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297

【공 고】

○대통령공고제263호(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3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0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1호(투자회사 등록취소).....	301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2호(자본감소 신청 승인)	30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호(회사분할 승인)	30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호(<가칭>서울신용평가<주>의 신용평가업 인가)	302
○교육부공고제2015-29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8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0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82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04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81호(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3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8호(신기술지정 신청)	3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9호(신기술지정 신청)	3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0호(보호기간연장 신청)	3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2호(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0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2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0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312
○병무청공고제2015-68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3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9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33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8호(공시송달)	33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5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34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7호(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34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422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343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504호(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344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7호(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조성>시행계획 <1차변경> 준공)	400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8호(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신축>시행계획 <7차변경> 승인)	40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5-135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406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학교<매양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406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407
○경기도공고제2015-1301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408
○충청남도공고제2015-1357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408
○(서울)강남구공고제2015-2101호(공시송달)	409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1호(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409

이 매우 시급하였고, 또한 막대한 양의 산업부산물로 생산되는 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석유제품의 생산 시 탈황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황은 2005년의 경우 약 8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건설 분야의 새로운 활용기술개발의 필요성에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인 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를 혼입한 SPC(sulfur polymer cement) 분말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개질재로서 그간의 기초적인 실험과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장시공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 유허개질 아스팔트의 제조기술의 신기술

<범위>

본 신기술은 개질 첨가제 SPC를 혼입한 아스팔트바인더와 혼합물의 실내성능 시험결과 마찰 안정도에서는 SPC의 첨가에 따른 개질성능이 골재와 골재간의 점착력등의 물성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간접인장시험에서 회복탄성계수가 상온의 경우 일반 아스팔트나 개질재보다 2배정도 크게 나타나고 60℃ 고온에서의 회복탄성계수는 높은 회복탄성계수를 나타내어 소성변형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과 개질첨가제 SPC를 첨가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적용되는 응력을 가장 빨리 소산시키는 실내물성 특성은 SPC 아스팔트 개질재의 실용화에 따른 현장보급을 위하여 “고기능 유허개질 아스팔트의 제조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서건설(주), ② 삼서공업(주)

나. 전화번호 : ① 02-2292-2494, ② 043-877-827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2호

3. 명칭 :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로(대.중.소 규격) 맨홀주변의 작업조건에 따라 원형절단기의 규격을 선택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평면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범위>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1.05.16 ~ 2016.05.1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2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와 하천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 '15.8.11 공포, '15.8.11 시행)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 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산정하도록 규정
-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다.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안 제5조~제7조)

-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도록 규정